

1/1/2025–12/31/2025 에 적용되는 최저 시급

## New York City

대규모 고용주(직원 11 명 이상)

**최저 임금 \$16.50**

40 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 \$24.75

**팁 받는 직원 \$16.50**  
40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 \$24.75

소규모 고용주(직원 10 명 이하)

**최저 임금 \$16.50**

40 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 \$24.75

**팁 받는 직원 \$16.50**  
40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 \$24.75

## Long Island 및 Westchester County

**최저 임금 \$16.50**

40 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 \$24.75

**팁 받는 직원 \$16.50**  
40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 \$24.75

## New York State 나머지 지역

**최저 임금 \$15.50**

40 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 \$23.25

**팁 받는 직원 \$15.50**  
40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 \$23.25

질문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혹은,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시려면

[www.labor.ny.gov/minimumwage](http://www.labor.ny.gov/minimumwage) 를 방문하거나 다음의 번호로 전화하십시오: **1-888-469-7365.**

임금을 상기에 명시된 최저 임금 미만으로 낮출수 있는 공제액 및 수당:

- **팁** – 2020년 12월 31일부터 고용주는 적용 가능한 최저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하고, 팁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- **식사와 숙소** –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제공한 식사와 숙소에 한해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적용 금액과 요건은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임금 규정 및 요약에 나와 있습니다.

상기에 명시된 최저 임금 이외에 받을 수 있는 추가 임금:

- **초과 근무 수당** – 주당 40시간(상주 직원의 경우 44시간) 이상의 초과 근무 수당은 정규 임금의 1 1/2배이어야 합니다(상기에 명시된 초과 근무수당 미만일 수 없음).  
*예외:* 주급이 최저 임금의 75배 이상인 봉급(일정급여)을 지급받는 전문직 근로자 또는 임원 및 관리 직원의 경우 초과 근무수당의 지급이 요구되지 않습니다.
- **출근 수당** – 근무일정대로 출근했는데 고용주에 의해 조기퇴근이 지시되었을 경우, 조기 퇴근일에 대해 최저 임금이 적용된 시간 외 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- **총 근무지 체류 시간** – 하루 근로 시간이 10시간이 넘을 경우, 그날에 대해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최저 임금 1시간의 임금과 동일한 금액의 추가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.
- **유니폼 관리** – 근로자가 자신의 유니폼을 직접 세탁할 경우, 추가 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주급금액은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